

노선인정(폐지·변경)에 관한 공고

「도로법」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(폐지·변경)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전라북도지사

2012년 12월 14일

① 종류	② 노선명	③ 노선 번호	④ 기점	⑤ 종점	⑥ 총연장 (km)	⑦ 중요 경과지 (중용구간)	⑧ 전용구간 연장 (km)	⑨ 중용구간 연장(km)	⑩ 비고
국가지원지방도	해남 ~ 원주	49호선	순창군 북흥면 지선리 452-1(도)	순창군 쌍치면 종곡리 57-5(도)	10.64km	국도21 국도29호선	-	순창군쌍치면 종곡리57-5(도) ~ 정읍시 부전동 699-1(도) 9.14km	노선 변경
국가지원지방도	해남 ~ 원주	49호선	순창군 북흥면 지선리 452-1 (도)	정읍시 부전동 1140(도)	17.36km	국도29호선	-	정읍시 부전동 1140(도) ~ 정읍시 부전동 699-1(도) 1.24km	노선 폐지
지방도	북흥 ~ 순창	792호선	순창군 금과면 발산리 산12-1	순창군 북흥면 반월리 42-2(도)	20.338km (연장 0.59km)	국도21호선	-	-	노선 변경 (연장)